

2026년도 제4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① 일 시: 2026. 4. 30.(목) 15:01~15:47
- ② 장 소: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 ③ 참석현황: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7명, 불참 3명
- 참석위원(17명): 위원장 이준한, 부위원장 서정현, 위원 강희찬, 위원 이영수, 위원 김규원, 위원 성하영, 위원 황병희, 위원 홍진배, 위원 노지승, 위원 한재길, 위원 하재학, 위원 최수봉, 위원 박기정, 위원 허종완, 위원 권기영, 위원 임영태, 위원 이헌구
 - 불참위원(3명): 위원 이윤정, 위원 조병관, 위원 송인석

④ 회의결과(요약)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제2026-14호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제2026-15호	2025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가결

1 제2026-1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국제지원과장]

1. 제안사유

- 가. 현행상 한국어강사 강사료는 인근 타대학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강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에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나. 그 외 강사 채용심사 및 학사 운영 등에 있어 센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사 채용 시 실질적 강의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표 정비
- 강의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신진강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구간 점수차 축소(안 제10조 및 별표5)
- 나. 강사료 지급기준 조정 및 지급단가 인상
- 석사학위 경력구간 축소(2개)하여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고, 박사학위 경력구간 하향 조정(안 제12조 별표 6)
 - 강사료 지급 기준 하한액 및 상한액 인상(안 제12조 별표 6)
 - 타기관 강의경력 포함 및 장기간 재직자의 경력 산정기준 합리성 제고(안 제12조 별표 6)
- 다. 연수생 학사관리 기준 및 봉사장학금 지급대상 정비
- 수료 및 제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사관리 안정성 확보(안 제7조 및 제8조)
 - 봉사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연수생 활동참여 유도(안 제 9조 별표4)
- 라. 직제 용어 정비
- “국제교류원” 및 “국제교류원장”을 “국제대외협력처” 및 “국제대외협력처장”으로 직제 반영(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별표4)
- 마. 강사료 산정기준 개정 적용시점 명확화
- 강사료 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및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신설(부칙)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p>제안설명에서 강사료 인상 필요성 및 재정적 영향은 설명되었으나, 신·구조문대비표 등에 제시된 실제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5는 경력 구간별 점수 차이를 축소하여 신진·우수 외부 강사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 별표6은 석·박사 학위자의 강사료 지급 경력 구간을 간소화하고, 구간별 강사료를 시간당 3,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임. ▶ 박사 학위자의 경우에도 경력 구간을 조정하여 기존 기준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우수 강사 확보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정 사항임.
<p>별표6 하단의 “다만, 본교 강의경력만으로 상한액에 도달한 자의 강의경력 산정은 본교 경력만을 인정하여 산정한다.”는 문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함. 회의자료상 개정안에는 해당 문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구는 강의경력 산정 시 타 대학 경력을 포함하는 취지와 중복되거나 혼선을 줄 수 있어 불필요한 문구로 판단됨. ▶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심의에서 별표6 표 아래 문구 중 “다만” 이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재무경영위원회 회의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아 구두로 설명한 사항임. ▶ 이에 따라 본 안건도 별표6의 “다만” 이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의
<p>수강생 증가로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수강생이 늘어나면 강사 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강사의 담당 시수가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추가 부담까지 감안해도 센터 운영에 재정적 무리가 없는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는 전체 수입의 70%를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으로 강사료 인상 및 운영 확대에 필요한 자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예상 수입과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p>강사료 인상은 필요하나, 수강생 증가에 따라 강의실 환경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비용을 학교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 자체 수입 또는 적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함.</p> <p>또한 향후 센터 자체 재원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센터 자체 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와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시설개선 과정에서는 학교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음. ▶ 향후에는 수강생 증가와 운영 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입 대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센터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예산 조정 및 적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가결 사항

→ [별표6] 표 아래 글 내용 중 “다만”이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원안	수정안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강사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p> <p>(1) 한국어교육 강사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시간당 기본강사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석사</td> <td>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4,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r> <td>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00원</td> </tr> <tr> <td rowspan="2">박사</td> <td>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00원</td> </tr> <tr> <td>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body> </table> <p>※ 강사료는 총 강의경력(타대학 포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u>다만, 본교 강의경력만으로 상한액에 도달한 자의 강의경력 산정은 본교 경력만을 인정하여 산정한다.</u></p>	구 분		시간당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	34,000원	<삭 제>	<삭 제>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	38,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	38,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	40,000원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강사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p> <p>(1) 한국어교육 강사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시간당 기본강사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석사</td> <td>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4,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r> <td>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00원</td> </tr> <tr> <td rowspan="2">박사</td> <td>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00원</td> </tr> <tr> <td>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body> </table> <p>※ 강사료는 총 강의경력(타대학 포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u><삭 제></u></p>	구 분		시간당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	34,000원	<삭 제>	<삭 제>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	38,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	38,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	40,000원
구 분		시간당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	34,000원																													
	<삭 제>	<삭 제>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	38,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	38,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	40,000원																													
구 분		시간당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미만	34,000원																													
	<삭 제>	<삭 제>																													
	학위 취득 후 경력3년 이상	38,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미만	38,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1년 이상	40,000원																													

2 제2026-15호 심의안건: 2025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안건요지 [보고자: 재무회계과장]

1.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25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현황

- 세입결산 현황

구분	예산현액(원)	징수결정액(원)	수납액(원)	미수납액(원)
합계	265,499,100,000	262,198,297,845	262,198,297,845	0
등록금수입	61,906,574,000	60,043,765,945	60,043,765,945	0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171,914,959,000	171,554,782,643	171,554,782,643	0
전입 및 기부금수입	2,935,485,000	2,897,159,650	2,897,159,650	0
교육부대 및 교육외 수입	5,752,388,000	4,783,920,584	4,783,920,584	0
고정자산 매각수입	60,000,000	28,005,000	28,005,000	0
이월금	13,529,468,000	13,529,468,477	13,529,468,477	0
수입대체경비사업	9,400,226,000	9,361,195,546	9,361,195,546	0

- 세출결산 현황

구분	예산현액(원)	지출액(원)	이월액(원)	집행잔액(원)
합계	265,499,100,000	250,351,973,061	551,057,370	14,596,069,569
인건비	101,540,023,000	95,173,878,771	0	6,366,144,229
관리운영비	11,830,994,000	11,079,969,313	0	751,024,687
학사 및 교육운영	47,088,465,000	44,007,929,803	9,845,000	3,070,690,197
교육인프라 구축	44,901,357,000	42,394,753,057	541,212,370	1,965,391,573
우수인재 양성	48,068,232,000	47,364,038,640	0	704,193,360
재무활동	3,622,979,000	3,622,978,790	0	210
평생교육지원	667,571,000	619,764,842	0	47,806,158
예비비	1,146,531,000	0	0	1,146,531,000
수입대체 경비사업	6,632,948,000	6,088,659,845	0	544,288,155

나. 순세계잉여금 현황

세입결산액(원)	세출결산액(원)	차인잔액(원)	이월액(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262,198,297,845	250,351,973,061	11,846,324,784	551,057,370	11,295,267,414

다.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원)

과목	제14(당기) 2026년 2월 28일 현재	제13(전기) 2025년 2월 28일 현재
자산	1,767,491,058,558	1,770,117,854,927
1)유동자산	77,841,088,110	78,518,819,064
2)비유동자산	1,689,649,970,448	1,691,599,035,863
부채	65,242,622,696	64,705,693,950
1)유동부채	65,139,611,209	63,985,908,712
2)비유동부채	103,011,487	719,785,238
자본	1,702,248,435,862	1,705,412,160,977
1)기본금	1,229,148,539,396	1,229,148,539,396
2)적립금	11,026,504,659	7,226,234,356
3)이익잉여금	462,073,391,807	469,037,387,225
부채와자본총계	1,767,491,058,558	1,770,117,854,927

라. 운영계산서 요약

(단위: 원)

과목	제14(당기)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제13(전기)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수입	248,987,406,376	242,126,817,055
운영비용	255,951,401,794	244,023,507,506
당기운영차액	(6,963,995,418)	(1,896,690,451)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보고자료상 세출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인잔액이 약 30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잔액과 차인잔액의 차이는 세입이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데 따른 것임. ▶ 세입 감소분이 약 30억 원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잔액과 차인잔액 간 차이가 발생함. ▶ 주요 원인은 등록금수입 감소이며, 그 외 기부금수입, 정부출연금, 이자수입, 교육외 수입 등에서도 일부 수납 차이가 발생함.
세입 감소 사유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영향이 가장 큰지 궁금함. 혁신사업비 등 특정 사업비 감소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감소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등록금 수입으로, 약 15억 원 정도가 예산 대비 적게 수납됨. ▶ 그 외에도 기부금수입, 정부출연금, 이자

	<p>수입, 교육외수입 등에서 예산 대비 수납 차이가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사업비 등 일부 사업성 재원의 영향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등록금수입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p>예산 이용·전용·변경·이체 사용내역 중 예산 변경이 총 66건, 약 13억 원 규모로 제시되어 있음. 이 규모가 예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예산 변경은 70건, 약 25억 원 규모였으며, 2025년도는 66건, 약 13억 원 규모임. ▶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 변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으로 약 12억 원 정도 감소함. ▶ 2023년도 예산 변경은 63건, 약 24억 원 규모였으므로, 2023년도와 비교해도 2025년도 예산 변경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 감소한 수준임.
<p>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약 4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관리운영비 증가의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 증가는 주로 건축물관리비 증가에 따른 것임. ▶ 대학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p>감가상각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가상각비가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궁금함. 또한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지출되거나 별도로 적립되는 금액인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항목이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감소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상 비용임. ▶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며, 별도 계좌에 적립하거나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아님. ▶ 현재 추세로는 고가 기자재 및 비품 구입, 노후 자산 증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당기 감가상각비 총액은 약 200억 원 수준이며, 증가분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설명됨.
<p>자료상 직원제수당 불용액이 약 6억 9,6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직원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연장근로수당 예산은 약 8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 ▶ 이 중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판단됨.
<p>직원 연장근로수당 예산에서 약 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은 연 16시간 제한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근로수당 예산이 남은 것은 개인별 연 16시간을 할당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임. ▶ 다만 일부 직원은 배정 시간을 조기에 모두 소진하여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제는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 조합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p>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결산 결과에 대한 평가나 총평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일반적인 감사보고서처럼 특별한 사항의 유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법령과 정관에 따라 법인회계 결산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구조이며, 그 결과물을 감사보고서라고 칭하고 있음. ▶ 이번 결산 결과 재무제표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대학의 부채 규모는 크지 않고, 부채의 주요 내용도 등록금 선수금, 퇴직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음. ▶ 전체 자산 대비 자본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대학의 재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설명됨. ▶ 향후 위원들이 보고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의 유무나 총평 성격의 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p>순세계잉여금이 약 11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지 궁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적립금 편성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향후에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폐회선언

- 이상 위원회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5시 47분에 폐회를 선언함